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7년 5월 19일(금) 15:00 ~ 16:15

● 회의장소 : 교구청 5층 사목상황실(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 이 사(이사 8명, 감사 2명)

대표이사 - 이병호

이 사 - 김영수, 김봉술, 경규봉, 양석현, 장상원, 서철승, 정식수

감 사 - 오성기, 최종문

● 참석자(이사 6명, 감사 2명)

대표이사 - 이병호

이 사 - 김봉술, 경규봉, 양석현, 서철승, 정식수

감 사 - 오성기, 최종문

1. 시작기도 : 모두 일어서서 상임이사의 선창으로 시작기도를 하다.

이병호 의장은 바쁘신 중에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힘과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도록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사 김영수, 장상원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

2. 전 회의록 안건 낭독 및 승인

김봉술 상임이사는 전 회의록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전차회의록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는지 묻는다. 의문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승인한다.

3. 안건 및 의결사항

No.	안 건	의결사항
1)	전주사랑의 집 : 운영규정 변경(안)	승인
2)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규정 변경(안)	승인
3)	작은천사어린이집 : 2016년 결산 및 17년 추가경정예산	승인
4)	법인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 : 전주사랑의 집, 작은천사어린이집, 빈첸시오의집	승인
	기타 사항	
5)	(1) 남원가톨릭재가노인복지센터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개입 강화에 따른 어려움	보고

4. 부의안건 상정

이병호 의장 : 이번 이사회에 각 시설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이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있습니까?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이병호 의장 : 추가로 제출할 안건이 없으시면 각 시설에서 제출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안건으로 심의하겠음을 선포합니다.

5. 부의안건 심의

1) 제1호 의안

: 전주사랑의집 운영규정 변경(안)

이병호 의장 : 전주사랑의 집 운영규정 변경에 관하여 상임이사께서 설명해 주세요.

김봉술 이사 : 전주사랑의 집의 2017년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표를 살펴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노숙인 복지사업 변경에 따라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을 신설하였고,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시설 운영의 필요성 등의 사유로 세부적인 개정사항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서철승 이사 : 노숙인 복지사업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운영규정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식수 이사 : 서철승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서철승 이사의 동의와 정식수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이사 : 모두 동의

이병호 의장 : 전체 이사가 동의하였기에 전주사랑의 집 운영규정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선언합니다.

2017년 운영규정 현행 · 개정안 대비표(전주사랑의집)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사유
운영규정 제 6장 기타	운영규정 제 6장 재무회계 및 기타	
운영규정 제 6장 제 45조 (장부등의비치) 내용삭제	운영규정 제 6장 제 45조 재무·회계 규정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에 따른다	해마다 내용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음
신설	인권지킴이단 운영규정 (생활인에 대한 규정 뒤에 첨부)	2017년 노숙인 복지사업안내 변경사항-인권지킴이단 설치 및 운영(국비지원 여부없이 모든 노숙인 재활·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 설치)
p82시간외수당 지급 규정 제 6조 (지급 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이며, 근로기준법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시설장을 제외한다.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로를 한 시설 종사자이며, 단 시설장이 모범인의 대표를 겸하는 경우 시설장은 퇴직적립금 및 시간외 수당 지급에서 제외된다.	감사원 지적사항 반영 2017년 노숙인복지사업안내 p64쪽 신설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사유
제2장 입·퇴소 관리 제19조 당연퇴소 3. 신설	3. 반복적인 폭행 및 폭언으로 시설 생활인들에게 피해를 줄 경우에는 운영 위원 회합을 가진 후 제 8호의 서식의 입(퇴)소심사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처에 제출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조치 한다.	생활인의 규칙 P98재12조-16조의 내용에서 운영위원회를 거쳐 신규생활실에 보호 조치한다로 약화되어 있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운영규정 제3장 입소보호 제26조(후생복지의 증진) 2. 생활인들의 연고자 연락 및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 내에 공중전화기를 설치한다.	2. 생활인들의 연고자 연락 및 가족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 내 전화기나 휴대폰을 사용한다.	공중전화기 사용자 수의 감소로 KT에서 회신을 차단하고 공중전화기 폐기
제27조(사망자 처리) 3. 사망자보고는 월1회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3. 사망자보고는 발생 시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사망자 발생 시 지자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있음
제4장 보건 의료 제34조(보건위생) 2. 신규입소자가 입소 당시 착의한 의복 중 남루한 피복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소각한다.	2. 신규입소자가 입소 당시 착의한 의복 중 남루한 피복은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폐기 처리한다.	현재는 소각하지 않고 폐기 처분하고 있음
제34조(보건위생) 3. 목욕은 전체 생활인이 주2회 이상 실시하며 이발, 세탁, 소독 및 방역은 수시로하여야 한다.	3. 목욕은 전체 생활인이 주3회 이상 실시하며 이발, 세탁, 소독 및 방역은 수시로 하여야 한다.	현재 주3회 이상 실시하고 있음
제4장 승진 제19조(근무평가) '직원은 연1회 이상의 본원의 근무평가는 받는다. 단 원장과 사무국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근무평가는 별표에 의한다.'(p49~50 근무평점서)	'직원은 연1회 이상의 본원의 근무평가는 받는다. 단 원장과 사무국장은 그러지 아니한다. 근무평가는 별표에 의한다'(별표서식 변경)	같은 평가기준으로 해마다 반복되어지면 평가의 효율성 저하됨(별표서식변경 함)
4. 복무규정 제1장 총칙 제7조(저녁근무) 본 규칙은 본원의 저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당직·숙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낮 근무시간 : 09:00 ~ 18:00 ② 저녁 근무시간 : 18:00 ~ 익일 9:00	4. 복무규정(취업규칙) 제7조(근무시간) 본 규칙은 본원의 저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당직·숙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시간외근로수당 규정) ① 낮 근무시간 : 09:00 ~ 18:00 (휴게시간 11:30~12:30) ② 저녁 근무시간 : 18:00 ~ 익일 9:00 (시간 외 근로 수당 규정)	
p40 복무규정 3장 휴가 제29조 병가 제29조(병가) 1.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29조(병가) 1.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급여는 2월의 범위 안에서 기본급으로 지급 한다..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제37조에 휴직 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병가 시 급여 지급에 관한 내용이 기재 되지 않아 명시 필요
제2장 복무 제13조(근무시간) 1. 직원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한다. 2. 직원의 근무시간은 7일(월/화/수/목/금/토/일) 중 40시간으로 한다. 3.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	3.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간주한다.(11:30~12:30)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지 않아 명시함
제3장 휴가 제25조(연가일수) 1. 자녀 사망 3일 7.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한다.	7.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 한다.	
제32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경조사 휴가의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과 경조사는 휴가일수에 산입 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경조사의 경우 5일 휴가이며 휴가 중복일 경우 산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8일 휴가로 이루어진다면 그 가중되는 업무를 다른 직원이 계속 대행해서 하여야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사유
제6장 교육후생과 안전 및 보건 제53조(건강 및 의료) 1. 본원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의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하여, 특수한 분야에서 일하는 직원은 1년에 2회 이상 신체검사를 받는다.	1. 본원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직원의 건강진단을 무료로 실시한다.	본원에서 특수한 분야 해당 사항이 없어 변경
문서관리규정 제3장 접수문서의 처리 제6절 문서의 발송 제36조(발송) 3. 전신, 전신타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발신하는 문서는 문서통제자가 기안용지의 시행 상 취급란에 전신, 전신타자, 전화 또는 모사전송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할 공문의 내용이 비밀사항이거나, 비밀사항이 아니라도 누설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은 암호 또는 음어로 발신하여야 한다. 4. 수신기관은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의 고장, 오자, 탈자 등으로 수신된 문서의 내용을 해독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송신을 요청하여야 하며, 재송신이라 표시하고 송신하여야 한다. 5. 문서주무부서에서는 전신타자기, 모사전송기 취급 담당자를 두며 취급자 이외는 문서를 송수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전자문서는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시설의 공식 전자우편주소를 이용하여 행정기관 외의 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4. 삭제 5. 삭제	
7. 시간외 여비 비정규직 제4조(지급기준) 2. 저녁근무 : 5시간 휴게시간 인정 (12:00~05:00)	2. 저녁근무 : 3시간 휴게시간 인정 (02:00~05:00)	p82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규정에 [별표1]의 내용과 동일하도록 하여야 함
여비규정 제7조(당일출장 여비) 3. 식대지출은 여비지급 시 식대(7,000원)와 동일하게 예산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식대지출은 여비지급 시 식대(9,000원)와 동일하게 예산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율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식대 인상
8. 차량운행규정 제2장 관리 제4조(타이어 관리) 2. 폐타이어는 사무국장에게 이관 처리한다.	2. 폐타이어는 담당자가 직접 처리한다.	담당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업무효율성에서 낫다고 판단됨
제5장 교통사고 제13조(사고책임) 차량사고가 발생 시는 운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차량사고가 발생 시는 운전자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운전자 20% : 시설80%)	세부내용이 없어서 추가 필요성 있음
10. 생활인에 대한 규정 제4장 금전관리 규정 제5조(수입, 지출, 물품구매) ④ 1인 용돈은 월 5만원으로 하며, 그 이상의 경우 본인과 직원의 동의를 받아 원장의 결재 후 지급 구매한다.	④ 생활인의 용돈은 필요시마다 본인의 동의를 얻어 원장의 결재 후 지급한다.	액수에 상관없이 본인의 동의하에 인출해드림
제 7조 (금전관리 기타사항) ① 개별 금전관리 지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하여 시설 장애인 소유의 금전에 대한 관리 안내를 참조로 한다.	① 개별 금전관리 지침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시설 장애인 소유의 금전에 대한 관리 안내를 참조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보건복지부로 명칭 변경
p90 시설의 설치기준 13.22m ²	p90 시설의 설치기준 18.48m ²	2017년 노숙인복지사업 설치기준 변경됨
p9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1항	p91 종사자의 직종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 제 4호	2017년 노숙인복지사업 설치기준 변경됨
p9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p92 종사자의 직종별 배치기준	2017년 노숙인복지사업 설치기준 변경됨

2) 제2호 의안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 운영규정 변경(안)

이병호 의장 : 다음은,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규정 변경(안)입니다. 김봉술 상임이사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김봉술 이사 :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 사항은 복무규정의 출산전후휴가 부문 삭제와 제11장 이용규정에서 이용료 변경 내용입니다. 첨부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영규정 항목은 법적인 변경 또는 관할시군구의 변경사항에 따라 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그런 부문에 해당한다고 생각됩니다.

1 운영규정 변경사항

연번	조항	현재	변경안	비고
----	----	----	-----	----

제5장 복무규정

1	제15조 (출산전후휴가)	②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며 최대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삭제	2016년도 2차 운영위원회 (2016. 6. 8.(수)) 승인 안건 중 군산시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맞춰 특별휴가 변경 당시 배우자 출산 8일이 5일로 변경됨. 별표7〈특별휴가 일수표〉는 조정되었으나 구체적 내용 변경 안 됨.
---	------------------	---	----	---

제11장 이용규정

2	제4조 (이용료)	“별표21”	“별표21” 세부내용 변경	사업 신규, 변경, 폐지에 따라 이용료 변경
---	--------------	--------	-------------------	-----------------------------

경규봉 이사 : 네,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운영규정(안)의 출산전후휴가 규정 삭제 및 이용료 규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철승 이사 : 경규봉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경규봉 동의와 서철승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사 전원 동의)

이병호 의장 : 전체 이사의 동의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규정 변경안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제3호 의안 : 작은천사어린이집 2016년 결산 및 17년 추가경정예산

이병호 의장 : 다음은 작은천사어린이집의 2016년 결산 및 2017년 추가경정예산의 건입니다. 상임이사께서 설명해주세요.

김봉술 이사 : 작은천사어린이집은 회계연도가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2016년

결산승인을 5월이사회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작은천사어린이집 2016년 결산금액은 아래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6년 세입결산은 1,079,282,26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59,275,015원입니다. 이월잔액은 120,007,250원으로 이월금은 작은천사어린이집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세입결산액 중 어린이집 원비수입금이 아직 미납된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017년 예산은 1,221,746천원입니다만, 추경예산 1,094,821천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지원보육료 및 특별활동비, 인건비보조금 등이 감소되었고 따라서 급여 및 보육활동비, 시설비 등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1) 2016년 결산

[단위 : 원]

시설	2016년 예산 (A)	2016년 세입결산(B)	2016년 세출결산(C)	증가 (B)-(C)	비고
작은천사어린이집	1,088,943,649	1,079,282,265	959,275,015	120,007,250	

2) 2017년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시설	2017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	증감		주요 인상(삭감)요인
			금액	%	
작은천사어린이집	1,094,821	1,221,746	-126,925	-10.4	세입) 정부지원보육료·특별활동비·인건비보조금 감소, 전입금 및 과년도 수입 증가 세출) 급여·보육활동비·시설비 등 감소

양석현 이사 : 위 안건에 동의합니다.

경규봉 이사 : 양석현 이사의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경규봉 이사의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을 여쭙니다. 그럼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모두 동의)

이병호 의장 : 작은천사어린이집의 2016년 세입결산은 1,079,282,265원, 세출결산은 959,275,015원이며, 이월금 120,007,250원은 이월되어 작은천사어린이집 운영비와 사업비로 사용할 것을 이사회에서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2017년 추경예산 1,094,821원을 승인하였음을 선포합니다.

4) 제4호 의안 : 법인 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

- 전주사랑의 집 / 빈첸시오의집

이병호 의장 : 법인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상임이사께서 설명해 주세요.

김봉술 이사 : 전주사랑의 집과 빈첸시오의 집 2017년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법인 산하시설 2017년 추가경정예산]

[단위 : 천원]

시설	2017년 추경예산	2017년 예산	증감		주요 인상(삭감)요인
			금액	%	
전주사랑의집	930,209	949,711	-19,502	-2.1	인건비 감소 업무추진비 변경 사무운영비 증가 재산조성비 증가 예비비 절감
빈첸시오의집	2,681,226	2,040,860	640,366	31.4	세입) 빈첸시오의집 증축으로 지정후원금 518,967천원 증액, 법인전입금 121,339천원 증액 세출) 빈첸시오의집 증축으로 시설비 640,336천원 증액

김봉술 이사 : 전주사랑의 집은 인건비 감소, 업무추진비 변경, 사무운영비 증가, 재산조성비 증가 등으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추가경정예산은 930,209원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빈첸시오의 집은 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정후원금 및 법인전입금등의 수입으로 전체 세입이 증액되었고 동시에 시설비가 증가되어 예산이 상승되었으므로, 2017년 추경예산을 2,681,226천원으로 수정할 예정입니다.

이병호 의장 : 전주사랑의 집과 빈첸시오의 집 추경예산을 자세히 살펴봐 주십시오.

정식수 이사 : 위 안건에 동의합니다.

서철승 이사 : 정식수 이사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정식수 이사와 서철승 이사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가부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이사 모두 동의)

이병호 의장 : 2017년 추경예산으로 전주사랑의 집 930,209천원, 빈첸시오의 집 2,681,226천원이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기타사항 (보고)

이병호 의장 :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상임이사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남원가톨릭재가노인복지센터

김봉술 이사 : 남원가톨릭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 급상승으로 인하여 운영상 위험에 처할 예상이 있어 보고하였습니다. 2016년 6월부터 시행예정인 이 법안은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 비율을 급여비용청구로 84.3%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될 경우 남은 금액으로 기관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국가개입 강화에 따른 어려움

김봉술 이사 : 2016년 5월 이후부터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가개입이 강화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실제로 여러 사건들이 입증해 주고 있으며, 따라서 가톨릭적 차원에서 대안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사님들께서 함께 고민해주시고 대안마련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철승 이사 : 네.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문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집중해야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병호 의장 : 네. 감사합니다.

6. 폐회

이병호 의장 : 오늘 논의사항 이외 다른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신지요? 없으면 폐회 동의 바랍니다.

경규봉 이사 : 정기이사회의 폐회를 동의합니다.

양석현 이사 : 경규봉 이사의 폐회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 전체 폐회를 찬성하다)

이병호 의장 : 2017년도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안이 모두 심의 종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폐회를 선언하고, 기도로 마치다.)

마침 시간 : 오후 4시 15분

대표이사

이 병 호



이 사

김 봉 술



이 사

경 규 봉



이 사

양 석 현



이 사

서 철 승



이 사

정 식 수



감 사

오 성 기



감 사

최 종 문



2017년 5월 19일



사회복지
법 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